2015년 WTO 공공포럼의 논의 내용 *

임 송 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개요

2001년부터 WTO는 해마다 이른바 공공포럼(Public Forum)을 개최하고 있다. 2001년에 "공공 심포지엄(Public Symposium)"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연중행사가 2006년부터 지금의 공공포럼으로 변모하여 지탱되고 있다. 공공포럼의 전체 주제는 다양하나, 무역체제와 무역자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1>은 2001년부터 열렸던 공공포럼의 주제들을 정리한 것이다.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에 개최된 공공포럼의 주제는 "무역이 작동한다(Trade Works)"이다. 특히, 올해는 WTO가 창립된 지 20주년이므로 이를 기념하여 무역의 긍정적인 효과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주제와 활동사항들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행사는 12월에 케냐 나이로비(Nairobi)에서 개최되는 제10차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를 앞두고, 오랫동안 정체되어 온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의 소규모 패키지라도 일단락을 짓기 위한 사전준비와 공감대의 형성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2015년 공공포럼에는 총 88개의 세션이 마련되었는데, 각 세션은 전문가들의 발표

* (songsooo@gmail.com).

와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공공포럼에는 WTO 회원국의 대표들뿐만 아니라 기업, NGO, 학계, 법무법인, 국제기구 등 1,50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공공포럼에 참석하려면 사전에 또는 현장에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행사의 전체 프로그램은 WTO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1)]

표 1 WTO 공공포럼의 주제(2001-2015년)

행사명	연도	주제
공공 심포지엄 (Public Symposium)	2001	세계 무역체제가 직면한 문제들
	2002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와 그 이상
	2003	칸쿤(Cancun) 각료회의가 직면한 과제
	2004	기로에 선 다자주의
	2005	10년 후의 WTO: 국제 문제들과 다자적인 해결책
공공 포럼 (Public Forum)	2006	21세기에 WTO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07	어떻게 WTO가 세계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가?
	2008	미래를 위한 무역
	2009	국제 문제, 국제 해결책: 더 나은 세계 관리(governance)
	2010	세계무역을 이끄는 요인들
	2011	세계 무역과제들에 대한 해결책 찾기
	2012	다자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는가?
	2013	혁신과 디지털 경제를 통한 무역의 확대
	2014	왜 무역이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가?
	2015	무역이 작동한다!

자료: WTO(https://goo.gl/BSoZt3).

본고는 필자가 주로 직접 참석하였던 농업관련 세션들의 논의와 토론내용을 선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2)]

2. 개막 세션: 무역이 더욱 포괄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기

WTO 사무총장 로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êdo)는 개막연설을 통해 무역이 갖는 순기능을 강조하였다.[3)] 그는 무역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을 타파하며, 세계의

1) (https://goo.gl/XRRU0z).
2) 공공포럼의 발표나 토론 자료들은 문서로 배포되지 않아 일부 정리된 내용은 미흡할 수 있음을 밝힘.
3) 연설문 전문은 다음 WTO 웹사이트 참조(https://goo.gl/xtOUIP).

경제와 비즈니스 및 사람들을 연결시킨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12월에 개최되는 나이로비 WTO 각료회의가 성장과 개발의 유용한 수단인 무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이끌어낼 기회라고 역설하였다. 특히, WTO 공공포럼 직전인 9월 25-27일에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한 정상회의(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2030의제와 17개의 지속가능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한 것을 상기시키며, 무역과 개발의 연계를 지적하였다.[4)]

사무총장의 연설 중간에 짤막한 동영상이 시연되었는데, 도시에 사는 한 청년이 신은 농구화가 한 개도국의 공장에서 생산되어 여러 단계의 운송과정을 통해 전달된다는 내용이다. 농구화의 생산, 검사, 포장, 운송, 판매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무역이 경제를 살리고, 특히 개도국의 고용을 창출하며 결국 경제개발에 이바지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5)]

이어 기조연설에 나선 네덜란드의 릴리안 프로우멘(Lilianne Ploumen) 무역개발협력부 장관(Minister of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은 그녀가 참석했던 UN 총회가 설정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언급하면서 무역도 글로벌 목표와 부합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을 포괄해야 하고 빈곤을 퇴치하며, 여성의 권한을 신장해야 하는 것 등이다.

프로우멘 장관은 네덜란드와 같이 작은 나라가 오늘날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역이 작동한 결과라고 강조하였다.[6)] 특히, 세계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일부분 또는 GVC의 창출을 통해 성장이 가능했음을 지적하였다. 개도국들도 무역을 통해 GVC에 참여한다면 새로운 개발 기회를 찾을 수 있고, 가치와 투자, 빈곤해결, 지식과 개발의 전파와 전이, 조직의 능력형성, 인권보호 등을 성취할 수 있다고 피력하였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C)이 발표한 2015-16년 세계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에서 네덜란드가 지난해 8위에서 5위로 상승한 것은 교육, 하부구조, 혁신, 좋은 정부관리(governance) 등의 영향이라고 소개하였다. 참고로 WEC가 144개국을 대상으로 산출한 GCI 기준으로 상위 10개국을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스위스가 5.76점으로 1위이고, 싱가포르, 미국, 독일, 네덜란드 순이다. 아시아 국가로 상위 10개국 안에 든 국가는 일본과 홍콩으로 각각 6위와 7위를 나타냈다. 한국

4) SDG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대섭 등(2015)과 다음 UN 웹사이트 참조(https://goo.gl/gyjM3k).
5) 해당 동영상은 다음 WTO 웹사이트 참조(https://goo.gl/6lC3k7).
6) 네덜란드의 최근 농업무역 실적에 관해서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https://goo.gl/TGe4JD).

은 4.99점으로 26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대만(14위)이나 말레이시아(20위), 사우디아라비아(24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른 아시아 국가인 이스라엘과 중국은 각각 27위와 28위를 기록하였다.

표 2 세계 경쟁력지수(GCI) 상위 10개국(2015–16년)

순위	국가	점수	2014–15년 순위
1	스위스	5.76	1
2	싱가포르	5.68	2
3	미국	5.61	3
4	독일	5.53	5
5	네덜란드	5.50	8
6	일본	5.47	6
7	홍콩	5.46	7
8	핀란드	5.45	4
9	스웨덴	5.43	10
10	영국	5.43	9
26	한국	4.99	26

주: 점수는 1–7점 기준임.
자료: WEC(2015).

끝으로, 프로우멘 장관은 아직은 미흡하지만 네덜란드의 여성 근로자들이 남성보다 17% 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무역자유화가 여성 동등성을 신장시킬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동아프리카의 관련 프로젝트에 네덜란드가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을 비롯해 모하메드(Mohamed) 케냐 외무장관, 장(Zhang) WTO 상소기구 위원, 스왑(Schwab) 미국 무역대표부 전 장관, 곤잘레스(Gonzalez) 세계은행 실장 등이 패널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은 무역자유화가 경제개발과 여성권익 향상에 기여해 왔고, 이를 위해 차별 없는 무역체제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특히, 미국의 농업보조가 개도국의 발전과 식량안보를 저해한다는 청중들의 질문과 지적에 대해 스왑 전 대표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개도국으로부터 상당한 상품들을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로 즉답을 회피하였다.[7] 또한 선

7) 스왑 전 대표는 현재 그는 메릴랜드대학(Univ. of Maryland)교수로 민간인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발언할 수 없다고 밝힘.

진국의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가 개도국의 부가가치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청중의 지적도 있었다.

3. 농업관련 세션들의 주요 논의 내용

3.1. 무역협정을 통한 농산물 무역장벽의 해소

세계농업기구(FAO)와 무역 이슈에 특화한 TILPA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주관한 세션이다. 패널은 농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먼저, 휴에르타(Huerta) TILPA 실장은 다음과 같이 많은 WTO 협정들이 농산물 무역에 관한 규범을 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① 서비스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GATS)
② 보조 및 상계조치 협정(Agreement on Subsid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③ 기술 장벽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④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협정(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⑥ 반덤핑 협정(Anti-Dumping Agreement, AD)
⑦ 농업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AoA)

이와 같은 다자협정 외에도 많은 자유무역협정(FTA)들이 농산물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일관되지 못하고 산재한 채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미국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밀란(Millan)은 전체 분쟁요청 건 중 단지 20%만이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 의해 다루어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USTR은 시장접근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표명하였다. 특히, 2009년 이후 WTO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8]와 SPS 위원회[9]에 제기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은 무역협정 이행이 정부 수준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뜻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농업

8) (https://goo.gl/GDkxzQ).
9) (https://goo.gl/bQ26R3).

관련 전략을 개혁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① 내부 및 외부의 평가

② 수출된 상품을 대상으로 한 평가

③ 재무 자원(financial resourcing)과 수익 목표화(profit targeting)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보다 정부 기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이를 위해 민간 및 정부의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입하고, 또한 이들에게 관련 자료를 배포할 수 있는 무역관련 조회처(inquiry point)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끝으로, 그는 양자 관계에 있어서도 무역 상대국들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점을 밝혔다.

과테말라의 몰리나(Molina)장관 자문관은 각국 내부의 절차가 미흡하고 예산 자원에 한계가 있어, 규정에 근거한 농산물 무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기업이 수출기준을 충족하는데 있어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들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무역협정들에 관련된 다양한 조치들을 개도국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개도국에 SPS 조치에 관한 대응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의 발레스(Valles)는 농산물과 관련된 무역 분쟁 통계들을 정리해 발표하였다. 이러한 분쟁들의 상당 부분은 비관세 조치(Non-Tariff Measure, NTM), 곧 SPS와 TBT가 차지하므로 이러한 현안들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1995-2014년에 농업협정의 조항을 근거로 제기된 WTO 분쟁 건수는 모두 77건이다. 이 가운데 한국이 관련된 소송은 <표 3>과 같다.

표 3 한국 관련 WTO 농업 분쟁들

번호	협의요청 시기	상황	내용	피소국	제소국
DS3	1995.4.4.	협의	농산물 테스트와 검사에 관한 조치	한국	미국
DS5	1995.5.3.	양국 합의	농산물의 유통기한(self-life)에 관한 조치	한국	미국
DS41	1996.7.28.	협의	농산물 검사에 관한 조치	한국	미국
DS161 DS169	1999.2.1. 1999.4.13.	한국 패소	소고기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한국	미국 호주
DS323	2004.12.1.	양국 합의	김에 관한 수입 쿼터	일본	한국

자료: WTO(https://goo.gl/HGO71N).

질의토론 시간에는 선진국의 농업보조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FAO의 작업방향이 개도국 문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한 청중의 지적에 대해 FAO는 개도국 농업에 관한 연구와 자료를 꾸준히 제시하고 있으며, 무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3.2. 네덜란드 관세청의 무역촉진 방식

네덜란드 관세청(Customs Administration)은 2014년 기준으로 세계은행이 산출하는 운송평가지표(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표 4>는 LPI 점수가 높은 10개국을 나타낸다. 이 밖에도 네덜란드는 WEF의 2014년 무역능력지표(Enabling Trade Index, ETI)에서 세계 3위를 기록하였다<표 5 참조>.

표 4 2014년 세계은행의 운송평가지표(LPI) 상위 10개국

순위	국가	LPI점수	통관	하부구조	국제운송	운송능력	추적 (tracing)	적시 (timeliness)
1	독일	4.12	4.10	4.32	3.74	4.12	4.17	4.36
2	네덜란드	4.05	3.96	4.23	3.64	4.13	4.07	4.34
3	벨기에	4.04	3.80	4.10	3.80	4.11	4.11	4.39
4	영국	4.01	3.94	4.16	3.63	4.03	4.08	4.33
5	싱가포르	4.00	4.01	4.28	3.70	3.97	3.90	4.25
6	스웨덴	3.96	3.75	4.09	3.76	3.98	3.97	4.26
7	노르웨이	3.96	4.21	4.19	3.42	4.19	3.50	4.36
8	룩셈부르크	3.95	3.82	3.91	3.82	3.78	3.68	4.71
9	미국	3.92	3.73	4.18	3.45	3.97	4.14	4.14
10	일본	3.91	3.78	4.16	3.52	3.93	3.95	4.24
:	:	:	:	:	:	:	:	:
21	한국	3.67	3.47	3.79	3.44	3.66	3.69	4.00

자료: World Bank(http://goo.gl/dkSKfh).

이처럼 네덜란드가 관세행정 및 국제운송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비결은 민간부문과 학계와 밀접한 협조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발표에는 네덜란드 관세행정에 관한 동영상 시연이 포함되었다. 동영상의 내용은 소비자가 슈퍼마켓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정보나 이동 경로, 선택한 식품의 가격을 스캐너를 이용해 소비자 스스로가 산출하여 계산대에서 정산하는 방식처럼, 통관도 이와 비슷한 체계

표 5 2014년 무역능력지표(ETI) 상위 10개국

순위	국가	ETI점수	시장접근	하부구조	운용환경
1	싱가포르	5.9	5.5	6.1	5.8
2	홍콩	5.5	4.1	6.0	5.8
3	네덜란드	5.3	3.4	6.0	5.5
4	뉴질랜드	5.2	4.3	5.0	5.6
5	핀란드	5.2	3.4	5.5	5.8
6	영국	5.2	3.4	6.0	5.4
7	스위스	5.2	3.5	5.7	5.7
8	칠레	5.1	5.5	4.4	5.0
9	스웨덴	5.1	3.4	5.5	5.5
10	독일	5.1	3.4	5.9	5.4
30	한국	4.7	3.1	5.8	4.3

주: 점수는 1–7점임.
자료: World Economic Forum(http://goo.gl/WxzBAz).

로 이뤄진다는 것이다.[10)]

슈퍼마켓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차에 선적된 컨테이너의 바코드를 스캔해서 신속하게 통관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무역업체로 사전에 등록된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 보장이 중요하다.

운송조합(Netherlands Organization for Freight and Logistics, FENEX)의 윌렘스(Willems) 정책 자문관은 "무역업체는 범죄자이고 정부는 어리석다"는 식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효율적인 통관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관세행정의 디지털화가 능사가 아닐 수 있으므로, 오히려 관세행정의 최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개도국의 수입촉진센터(CPI)의 데 만(de Man) 부센터장은 무역비용을 낮추고 투명성을 높이려면 개도국의 능력형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개도국의 중소형 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 SME)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수출업체로 변모하도록 지

10) 슈퍼마켓에서 소비자는 손에 들고 다니는 소형 가격 스캐너를 사용해 선택한 식품의 바코드를 찍어 스스로 가격을 합산한 후 이를 슈퍼마켓 점원과 정산하는 방식임. 이는 정직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정직한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직함을 투명하게 나타내기를 원하므로 기꺼이 이 방식을 수용한다고 함.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슈퍼마켓은 스캐너 사용 소비자들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계산대를 마련해 기다림 없이 신속한 정산이 이뤄지도록 배려하고 있음. 가끔 무작위로 대상을 추출하여 모든 식품이 제대로 스캔되어 합산되었는지 검사한다고 함.

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개도국의 SME이 다양한 무역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것이 곧 이들로 하여금 세계 가치사슬에 더 잘 통합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3.3. 농업경영 관점에서 사회적 위임사항 대응

세계농민회(World Farmers' Organization, WFO)[11],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12], FAO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세션이다. 세션 주제는 농업경영자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관한 것이다.

먼저, 뉴레카(Nguleka) WFO 회장은 인구 증가의 전망과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아래서라도 식량을 더욱 증산해야 하는 과제를 상기시키면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 과정에 농민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농민을 경제활동 주체로서 대우해야하며 그러한 틀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곧 식량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농민의 의견에 세계가 더욱 경청해야 함을 강조하였다.[13]

UNECE 시장접근 부서의 벱살라이넨(Vepsalainen) 부장은 오늘날 농민들이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을 마련할 때 농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효율을 증진시키려면, 그들이 이러한 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 농민들 스스로 삶을 지탱하고 비즈니스로서 농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표방하였다.

FAO에 소속된 무크타(Mukhtar)는 "OECD-FAO농업전망(Agricultural Outlook) 2015-2024"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① 향후 10년 간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점, ② 대부분의 농산물 무역량이 증가할 것이란 점, ③ 소비자의 수요가 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다. <그림 1>은 OECD-FAO가 제시한 옥수수의 장기 실질가격 추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도전과제에 직면하여 식량안보와 농민의 삶을 보장하는 것 간의 격차, 무역정책과 농정정책간의 격차를 줄이려면 농민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11) (www.wfo-oma.com).

12) (www.unece.org).

13) 그녀는 자신 또한 농민이라면서 식량생산을 둘러싼 국제적 문제들에 관해 농민이 주체가 되어야 함을 여러 번 강조하였음. 실제로 WFO는 식량안보와 무역자유화 등 여러 주제에 관한 성명서들(position paper)을 포럼 기간에 참석자들에게 배포함. 그러나 농민의 의견을 더욱 반영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패널의 논의가 미흡하였음. 예를 들면, 식량안보를 확충하는 의제에 있어 농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음.

그림 1 옥수수의 실질가격 추이(1908-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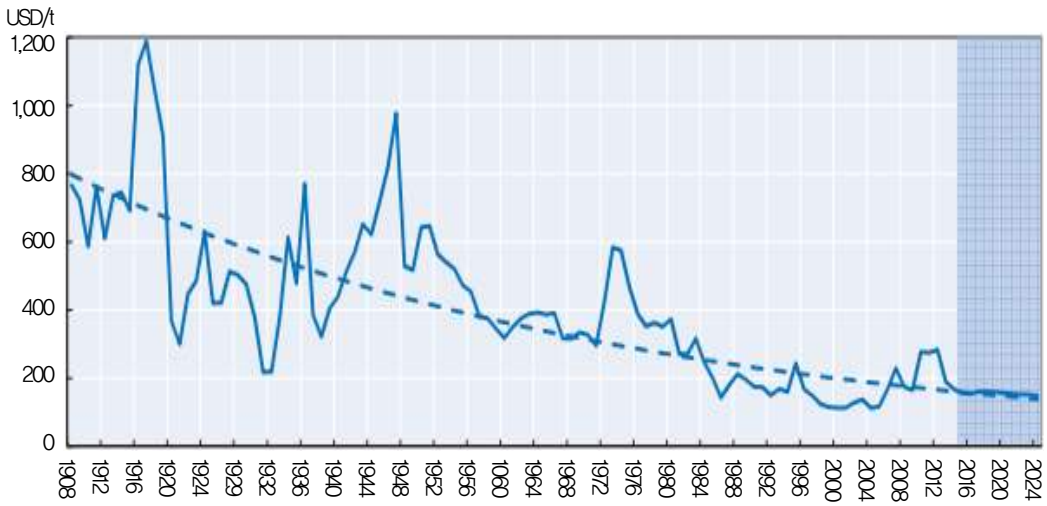

자료: OECD/FAO(2015).

WFO의 엣체베헤레(Etchevehere) 위원은 농민의 능력형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도전하는 제안을 제시하였다. 세계가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실제로 구매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경제 환경에서는 식량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그 음(-)의 영향은 생산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식량무역이 원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① 민주적이고 강력한 제도의 확충, 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치 시행, ③ 농업부문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공공정책 시행, ④ 농업 생산국을 대상으로 한 농업투자를 증대하여 무역을 확대, ⑤ 더 개선되고 투명한 정보체제의 창출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개진하였다.

3.4. 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WTO 분쟁해결절차

이번 세션은 일본 정부가 직접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사회는 사이토(Saito) 일본 외무성 국장이 맡았고, 국제변호사들과 일본 경제무역산업성 국장, 필리핀 외교관 등이 토론자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한 분쟁해결체제(Dispute Settlement Mechanism, DSM)의 특성을 찾아내고, 아시아의 관점에서 DSM를 개선하는 방안 논의에 방점을 두었다.

먼저, 패널은 DSM이 무역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자유무역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DSM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다른

WTO 회원국들과 특별히 다른 점은 그리 많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 다른 공통된 견해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아시아 국가들이 DSM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참고로 <표 6>은 아시아 국가들의 DSM 참여에 관한 통계이다.[14] 1995-2012년에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국가는 인도로 총 21건이고, 일본이 16건, 한국이 15건, 태국이 13건, 중국이 10건 순이다. 피소된 건수로는 중국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가 21건, 일본이 15건, 한국이 14건 순이다.

표 6 아시아 국가들의 WTO/DSM 실적(1995–2012년)

회원국	제소 건수	피소 건수	제3자로 참석 건 수	합계
일본	16	15	127	158
중국	10	29	92	131
인도	21	21	79	121
한국	15	14	68	97
대만	3	0	71	74
태국	13	3	57	73
필리핀	5	6	9	20
인도네시아	6	4	8	18
베트남	2	0	15	17
홍콩	1	0	13	14
파키스탄	3	2	9	14
싱가포르	1	0	8	9
말레이시아	1	1	3	5
스리랑카	1	0	3	4
방글라데시	1	0	1	2
브루넷이	0	0	0	0
캄보디아	0	0	0	0
마카오	0	0	0	0
몽골	0	0	0	0
미얀마	0	0	0	0
파푸아뉴기니	0	0	0	0
합 계	99	95	563	–

자료: ICTSD(2012).

14) 세션에서 제시된 분쟁 통계는 최근 실적까지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이 발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다른 참고문헌에 기초한 통계를 제시함.

이처럼 회원국 간의 공통적인 경험이나 특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또는 역사적 배경의 차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아시아 회원국들의 상대적인 특징을 짚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소송을 담당하는 정부와 산업부문 간 제도화된 소통이 부족하다.[15)]

② 서로 대립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아 갈등을 해결하려는 정서가 부재하다.

③ 한 사건에 대한 대립을 해당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④ 내부 법무 팀보다 외부 특히 서양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16)]

⑤ DSM의 첫 번째 단계인 양자 협의를 일단 요청한 경우 그 다음 단계인 본격 소송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17)]

패널은 DSM으로 말미암아 더욱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하였다. 특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과 그 평결된 결과가 양자 간 내재하고 있는 비공식적인 무역 갈등이나 문제들을 해결하는 간접효과를 발휘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무역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DSM의 미래에 관해 패널은 WTO 규범이 행동규칙으로서 널리 인지되고 국가 특정적인 문제보다 공통의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면, 서로 대립하는 성향의 법적 소송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WTO 사무국에 아시아 출신의 직원들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하고, 아시아 언어 편집자들을 더 많이 배치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 토론자는 법정에서 기존의 발언시간 제한(예: 15분) 방식에서 발언하는 단어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WTO 공식 언어에 능숙하지 않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유리할 것이란 재미있는 제안도 제시했다.[18)]

---

15)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산업체의 이해관계가 WTO 소송과 직접 연계되고, 정부는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음.

16) 이에 대해서는 토론자들의 의견이 다른 점이 있었음. 국가 내부 법무팀에 의한 소송 대응이 부서나 국가의 장기 전략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이뤄지므로 더욱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기된 반면에, 쌍방이 직접 대립하거나 법적 보복을 발동하는 것 등을 꺼리는 아시아적 문화 배경아래서는 승소를 최우선시하는 외부 법무법인에 의한 접근방법이 유리하다는 견해도 제시되었음.

17) 그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은 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심사숙고하며, 이미 협의를 요청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면 소송까지 염두에 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임. 반면 비 아시아 회원국들의 경우 양자협의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와 설명을 요청하고, 불충분한 이해나 오해 또는 갈등을 해소하는 경향을 보임.

18) WTO의 공식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임.

3.5. 아시아 개도국의 농산물 세계 가치사슬(GVC)에 참여

개도국의 농업부문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려면 세계 가치사슬(GVC)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결국 농촌지역의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GVC에 참여하려면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그러한 국제기준 가운데 하나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이다.[19] 이번 세션은 일본 무역진흥회 아시아경제연구소(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IDE-JETRO)[20]가 주관하여 개도국의 GVC 참여의 전제조건으로서 GAP을 주제로 다루었다.

먼저 IDE-JETRO의 미치다(Michida) 연구원은 Global GAP이 다양한 방식으로 아시아에 보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있지만 주로 민간기업의 무역이나 공급체인 연계를 통해 GAP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다.[21] 일부 국가들은 지역의 상황에 맞춰 Global GAP 요건을 수정하여 적용하기도 하는데, 이로써 수출하려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나 기업은 일관되지 않고 복잡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곧 수출업체의 처지에서 GAP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출시장 진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이다. 지역 수준의 GAP 인증을 일일이 얻는데 소요되는 높은 비용과 외국어 제약도 잠재적인 무역장벽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장벽을 해결하려면 GVC의 틀 안에서 각각 국가 수준, 산업부문 수준, 기업 수준에서 GAP 규정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표 7>은 ① 국내 생산방식의 개선, ② 수출 촉진, ③ 국내 다른 규정과 조화, ④수입의 통제 등 다양한 목적아래 시행되고 있는 아시아 각국의 GAP 조치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가운데 특이한 사항은 인도네시아가 Global GAP을 특정 농산물을 수입하는 정부의 규제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민간 및 공공부문이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GAP 기준은 GVC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SME의 처지, 곧 능력 형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위치에서 이처럼 다중의 GAP 기준들을 충족해야 더 넓은 수출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요건은 시장접근을

19) GAP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임. 이력추적번호를 통해 해당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회수할 수 있음. 예방원칙에 따라 토양 및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농약이나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함으로써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보장함. 생산단계, 수확 후 처리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위해요소를 관리하게 됨. 이와 같은 GAP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www.gap.go.kr). FAO가 제공하는 관련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 참조(http://www.fao.org/prods/gap/).

20) (http://www.ide.go.jp/).

21) Global GAP의 한 사례는 다음처럼 농산물에 대해 자발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민간 기관임(http://www.globalgap.org). 이 조직에는 약 소매와 식품서비스 49개 업체와 약 129개 생산업체 및 기타 단체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표 7 아시아 국가들의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현황

구분	GAP의 목적			
	국내 관행의 개선	수출	국내 규정과 조화	수입 통제
민간 부문	AEON A-Q(일본)	Thai GAP(태국)	JGAP(일본)	–
공공 부문	GAPs(일본) Q GAP(태국) SALM(말레이시아) GAP VF(싱가포르) PhilGAP(필리핀) IndonGAP(인도네시아) ChinaGAP(China)	IndGAP(인도) VietGAP(베트남) MyGAP(말레이시아) ChinaGAP(중국)	ASEANGAP(아세안)	Global GAP(인도네시아)

자료: 2015 Public Forum 발표자료.

저해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패널은 GAP 기준의 단순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영국 서섹스 대학(Univ. of Sussex)의 험프리(Humphrey) 연구원은 영국의 한 수산물 수입업체 사례를 들어 민간부문이 설정하는 기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수입업체는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다음과 같은 인증들을 소유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가공시설에 관한 인증
② 환경 인증
③ 새우 등 수산물 공급업체의 수산물 우수관리제도
④ 영국의 윤리적 무역규약에 부합하는 노동 기준

그러나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수출업체가 이와 같은 민간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수산물, 육류, 유제품 등 위해요소가 상대적으로 큰 식품들을 제외하면, 다른 식품들은 보통 공공부문에 의한 규제 대상이 아니란 설명이다. 특히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민간이 정한 기준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고 지적하였다.

영국에서 민간기준이 부각된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예시하였다. 첫째, 업체의 위해성 인식(risk perception)이다. 1990년의 식품안전법의 채택 이후 식품안전에 관한 엄격한 책임이 요구되면서 브랜드 정체성의 유지 전략 측면에서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절차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 슈퍼마켓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을 각인시키려는 것이다. 둘째, 구매처의 권한(buyer power)이다. 대형 구

매처의 경우 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이러한 기준들을 강요하곤 한다. 그러나 영국의 농업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체 기준아래 영농활동을 하고 있으며, Global GAP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아래 험프리 연구원은 Global GAP이 동유럽보단 서유럽에, 남유럽보단 북유럽에서 상대적으로 폭 넓게 채택되고 있으나, 아시아의 수출업체들이 반드시 그 인증을 받아야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일본과 미국의 Global GAP 채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도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① 제3자 기관에 의한 인증뿐 아니라, ② 정부의 강제 규정, ③ 시범사업을 통한 우수관리제도의 촉진, ④ 민간부문 스스로의 관리규정 등 다양한 방식의 식품안전 보장방안이 존재하므로 Global GAP이 가장 우수한 방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IDE-JETRO의 레이 레이(Lei Lei) 연구원은 호주, EU,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의 국경에서 수입이 거부된 농식품의 가치가 2013년 기준으로 총 93억 2,800만 달러(약 10조 5,759억 원)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수입거부의 주된 이유는 수입국의 식품안전 규정을 수출업체가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데 있다. 특히 농업용 화학제품과 수

표 8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수입 거부된 상위 15개 수출국 현황(2013년 기준)

순위	호주		EU		일본		미국	
	수출국	수입비중 (%)	수출국	수입비중 (%)	수출국	수입비중 (%)	수출국	수입비중 (%)
1	중국	6.4	중국	4.6	중국	14.3	멕시코	13.8
2	인도	1.7	터키	3.4	미국	24.3	인도	2.3
3	일본	0.7	이란	0.4	베트남	1.7	중국	5.7
4	미국	10.8	인도	2.3	태국	5.8	영국	2.3
5	이탈리아	4.4	미국	8.1	가나	0.2	캐나다	17.5
6	태국	6.6	브라질	12.2	이탈리아	1.3	베트남	1.8
7	한국	0.7	태국	2.4	한국	2.7	도미니카공화국	0.4
8	필리핀	0.5	베트남	1.8	인도	1.5	태국	3.8
9	베트남	2.8	아르헨티나	6.6	인도네시아	1.8	인도네시아	2.2
10	말레이시아	3.7	이집트	0.6	에콰도르	0.2	일본	0.8
11	인도네시아	1.8	모로코	2.1	캐나다	6.5	한국	0.5
12	프랑스	3.1	인도네시아	2.9	프랑스	2.8	이탈리아	3.9
13	영국	3.7	우크라이나	2.0	필리핀	2.0	프랑스	4.2
14	남아공	0.8	방글라데시	0.3	브라질	4.1	필리핀	1.3
15	스리랑카	0.4	가나	1.2	스페인	0.8	파키스탄	0.1

자료: 2015 Public Forum 발표자료.

의 약제의 잔류물질에 관한 규정 위반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표 8>은 2013년 기준으로 주요 선진 4개국에서 농식품의 수입이 국경에서 거부된 상위 15개 수출국들을 나타낸다.

호주시장에서 수입거부의 가장 큰 요인은 표시제 요건의 미준수이다. EU에서는 박테리아 오염과 식품첨가물, 일본시장에서는 식품첨가물과 박테리아 오염, 미국 시장에서는 표시제와 문서요건 미충족 및 위생통제 미흡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①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농식품에 대한 거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해당국의 수출업체들이 수입국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②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과 수입 거부율 간의 연계가 약하다. 예를 들면, 위 3개 시장에서 미국의 시장점유율이 중국의 수치보다 높지만, 이들 국가에서 중국의 거부율이 미국보다 높았다.

③ 수입통관이 거부된 수출국 과반수가 아시아 국가들이란 사실이다. 이는 수입거부가 앞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농식품 수출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커다란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3.6. 식량안보와 무역정책의 연계

이번 세션은 지정된 토론자가 없이 QUNO(Quaker United Nations Office)[22]가 개발 중인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을 시연하고 그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QUNO는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형성된 단체이다. 현재 아프리카와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약 90만 명이 퀘이커(Quakers)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의 평화, 진실, 정의, 형평성, 단순화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UN, 각국 정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고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QUNO가 개발하고 있는 식량안보와 무역정책에 관한 모바일 앱은 인터넷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식량안보와 관련된 60개 이상의 정책 조치들을 담고 있다. WTO 규정에 해당하는 각종 관세나 국내 및 수출보조 조치들을 메뉴방식으로 정리하여 각각의 조치가 식량안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보조정책을 WTO 규범에 맞춰 분류하고, 이러한 분류가 개도국의 협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담고 있

22) (http://www.quno.org).

다. 이 앱에는 사용자가 식량안보에 관련된 정책 경험을 첨가할 수 있는 위키("Wiki")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이 앱은 개발이 완료되는 연말쯤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량안보 앱을 잠깐 사용해 본 소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WTO 규범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서 농민이나 일반인이 사용하기엔 어려울 것이다. 농민이나 일반인보다 개도국 정부의 공무원들이나 WTO 대표단 또는 전문가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② 어떤 무역조치가 특정 지역의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역과 농가 특정적인 영향(예: 아프리카의 바나나 생산 농가)을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③ 다수의 무역 분쟁에서 알 수 있듯이, WTO 규정의 복잡함과 사례별로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위 ②의 정보는 상당히 "일반적인" 사항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4. 농업 외 세션들의 주요 논의 내용

4.1. 무역과 원산지 규정

이번 세션은 스포츠 상품의 원산지 규정과 무역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비록 논의의 주요 대상이 농산물은 아니지만, 기존의 복잡한 원산지 규정이 단순화되지 않고서는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y, LDC)의 무역 이득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소개한다. 세계스포츠산업협회(World nited Nations Office)[23]가 주관한 세션이며, UNCTAD와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의 대표들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국제적으로 통합된 원산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개도국의 특별우대조치 또는 특혜적 시장접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EU는 LDC로부터 수입하는 군수 관련 이외의 모든 제품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제도(duty-free, quota-free, DFQF)를 시행하고 있다. LDC가 이러한 DFQF 특혜조치의 혜택을 받으려면 EU가 정한 원산지 규정, 곧 특혜조치 대상인 LDC산 제품이란 것을 증명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원산지 규정이 수입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이하고 복잡한 규정을 준수하는 추가비용이 개도 수출국에 부과된다는 점이다.

23) (http://www.wfsgi.org/).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사례가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iphone 4)이다. <그림 2>은 아이폰의 가치 배분체계를 나타낸다. 중국에서 조립되어 아이폰에는 "중국산(made in China)"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아이폰에 내재된 대부분의 가치는 애플사나 다른 나라 기업들에 돌아간다. 2010년 기준으로 소매가격 549 달러의 아이폰 소매가격에서 중국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몫은 10달러에 불과하지만, 원산지는 중국산이 되는 것이다.

그림 2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iPhone)에 내재된 가치 배분(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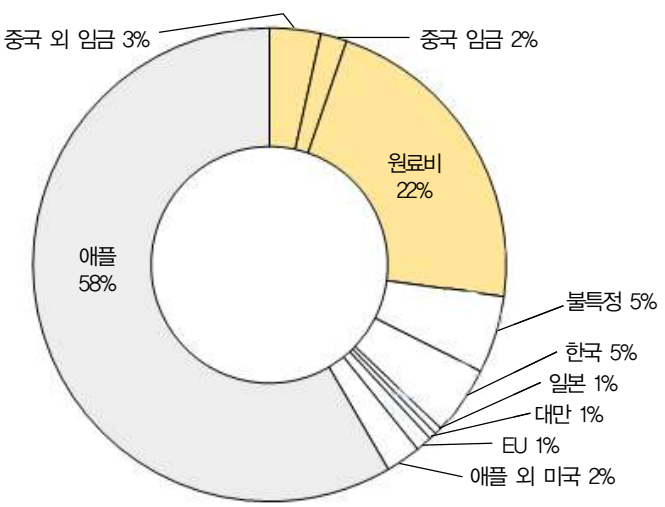

자료: Kraemer et al.(2011).

미국의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이름이나 특성 또는 사용 측면에서 새롭고 특정적인 제품으로 상당부분 완성된 마지막 장소"가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부품을 조립하여 완전한 형태의 아이폰이 생산되는 중국이 원산지가 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포츠 셔츠의 경우 미국에서 만들어진 원료를 가지고 미국에서 온전히 생산해야 "미국산(made in U.S.A.)"으로 표기할 수 있다.

지금의 원산지 규정은 제품의 생산비용 대부분이 디자인이나 배분 또는 유통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그 경제적인 가치에 원산지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GVC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다자체제아래 일관된 원산지 규정이 없다는 사실은 국제 비즈니스의 비용으로 남게 되며, 개도국으로 하여금 특혜적인 시장접근을 활용하는 데 장애로 작용한다.

2011년에 EU는 원산지 규정을 단순화하여 LDC로 하여금 특혜관세의 혜택을 더욱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UNCTAD 2013).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의류의 경우(HS 61류와 62류) LDC에는 단일공정(single transformation)이, 다른 개도국에는 복수공정(double transformation)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LDC는 수입한 원단(fabric)을 사용해 의류를 만들어 수출할 때에도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복수공정이 적용되는 다른 개도국의 경우 수입한 원사(yard)를 사용할 수 있으나, 원단은 직접 만든 후 최종 의류를 생산해야 원산지 특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수입 원단을 사용하되 프린트를 하고, 이에 더하여 최소한 2개 이상의 작업을 더해야 하며, 수입 원단이 최종 의류가격의 47.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농산물의 원산지 규정은 LDC와 다른 개도국에 똑같이 적용된다.

참고로, 다수의 국가로부터 공급된 원료로 제조된 식품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가 표기되고 있다<표 9 참조>. 호주, EU, 미국은 모든 생산국을 표기하도록 강제하거나 허용하는 반면 호주는 한 나라만 원산지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호주, EU, 일본, 미국 등은 식품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도 표기하고 있다. 반면에 개도국의 경우 원료의 원산지까지 표기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표 9 식품에 관한 주요국의 복수 원산지 표시 방법

국가	원산지 표시 방법
호주	소매업체가 각각의 원산지 표기, 또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혼합으로 표기
캐나다	복수의 원산지 표기는 허용하지 않지만 혼합된 것임을 표기하는 것은 가능 예: "(국가) (상품명)과 (국가) (상품명) 혼합(blend)"
EU	다수의 회원국에서 생산된 식품을 혼합한 경우 "Community"로 표기하거나 생산국의 이름을 모두 표기
미국	모든 생산국의 이름을 표기
남아프리카공화국	생산국뿐만 아니라 포장한 국가 이름도 표기

자료: Su(2014).

4.2. 모바일 기술혁신과 무역

이번 세션은 모바일 기술(mobile technology)이 경제성장의 주요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보스톤 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BSG)의 최근 보고서를 중심으로 모바일 기술혁신과 무역의 잠재력에 관해 논의하였다(BSG 2015). 이 보고서는 미국, 독일, 한국(이상 선진국으로 분류)과 브라질, 중국, 인도(신흥국으로 분류)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는 3,315명의 중소기업(SME) 관계자와 7,729명의 소비자들이 참여하였다.

모바일 기술이 6개국의 GDP에 기여하는 비중을 산출하면 <표 10>과 같다. 2014년 현재 한국의 경우 모바일 기술이 GDP에 기여하는 비중은 11%로,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한국의 모바일 관련 산업이 창출한 GDP는 1,430억 달러(약 162조 원)에 이른다.

표 10 주요 6개국의 모바일 GDP 현황(2014년)

분류	미국	독일	한국	브라질	중국	인도
모바일 GDP 기여액(10억 달러)	548	69	143	45	365	47
모바일 GDP 기여율(%)	3.2	1.8	11.0	1.7	3.7	2.2
모바일 GDP의 연간 성장률(%) 2009-14년	15.4	9.1	18.3	11.7	17.7	12.4

자료: BCG(2015).

신흥국의 경우 중국이 모바일 부문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중국의 전자상거래와 최근의 모바일 상거래의 총 매출액은 2,950억 달러(약 334조 원)로 추정되었다. 이는 2010년 수준보다 4배가 늘어난 결과이다. 2015년까지 모바일 상거래 규모는 414억 달러(약 47조 원)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체 전자상거래의 8%에 해당한다. 특히, 2014년에 모바일로 결재할 수 있는 알리페이(Alipay)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소비자 수가 1억 9,000만 명을 넘어선 사실은 알리바바(Alibaba)[24]가 중국 온라인 시장의 80%를 장악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4년에 알리페이로 결재된 금액은 총 5,000억 달러(약 56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1>은 모바일 기술이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간주되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이 가운데 ① 모바일 리더(leader) 기업의 성장률이 다른 기업보다 2-8배나 높다는 점, ② 모바일 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치매김이 높다는 점, ③ 모바일 기술에 관련한 R&D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그 파급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은 모바일 혁신이 경제 전반에 지속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25]

패널은 모바일 기술이 개도국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모바일 혁신은 상대적으로 기술이 뒤쳐져 있는 개도국 기업으로 하여금 도약효과(leap-frog effect)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부각키셨다. GVC에서 모바일 기

24) (www.alibaba.com).
25) 특히, 모바일 기술에 대한 R&D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 ③의 시사점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술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표준화가 핵심이란 지적이다. 반면에 한 토론자는 세계인구의 62%가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모바일 기술이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표 11 경제성장 엔진으로서 모바일 기술의 효과

분류	세분류	효과
경제에 직접 미치는 영향	2014년 GVC 매출액	최대 3.3조 달러(약 3,737조 원)
	GDP 창출액(6개국)	최소 1.2조 달러(약 1,359조 원)
	GVC에서 창출하는 고용자 수	1,100만 명
	R&D 투자 규모	1.8조 달러(약 2,038조 원)
	벤처자금 조달 규무	370억 달러(약 42조 원)
중소기업(SME)에 미치는 영향	모바일 리더(leader) 기업	기술채택이 느린 기업보다 매출액과 고용 성장률이 2-8배 높음.
	6개국에서 SME의 모바일 격차(divide)를 해소할 경우	700만 명의 고용 창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모바일 기술이 소득에 기여하는 비율	소득의 11-45%
	6개국에서 창출하는 소비자 잉여	6.4조 달러(약 7,248조 원)

주: 1. GVC은 세계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말함.
2. 모바일 리더(leader)는 모바일 기술을 경영과 관리에 적극 활용하는 기업을 지칭함.
자료: BCG(2015).

5. 결론과 시사점

WTO 출범 20주년을 맞아 진행된 2015년 공공포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무역과 관련된 여러 당면과제들에 관해 함께 고민하고 WTO의 미래를 논의한 행사였다. 농업 의제들에 국한하여 본다면, 특히 많은 아프리카 농민단체들과 국제 비정부기구들(NGO)이 참여하여 WTO가 추구하는 무역자유화와 함께 국가와 지역 및 농가 수준의 식량안보, 식량에 대한 권리, 농촌의 빈곤, 지속가능한 개발, 인권, 농촌 여성의 권한 등 폭 넓은 이슈들을 다룬 행사로 평가할 수 있다. WTO 협상 또는 기존의 국제 규범이라는 틀 안의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과 상이한 접근방식이 제시되고 논의되었다는 점도 공공포럼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세션의 또 다른 특징은 개도국 생산자인 농민의 목소리가 WTO 논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세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선진국의

농업보조 철폐가 선행되어야 도하개발의제(DDA)가 진정한 개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도 강하게 표출되었다.

아제베도(Azevêdo) WTO 사무총장은 2015년 12월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10차 각료회의가 성공해야, 곧 무역이 작동해야("Trade Works") 개도국이 빈곤을 타파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26] 그러나 포럼의 분위기는 각료회의에 대한 기대나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논의보다는 선진국의 농정개혁을 부르짖는 개도국 및 국제 NGO들의 요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회원국 정부나 WTO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그렇겠지만, 이를 통해 선진국, 특히 미국의 국내 정책이나 WTO 협상 태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 가치사슬(GVC)에 개도국의 농업부문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 능력이 형성 내지 향상되어야 하며, 세계 무역체제에 개도국이 통합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또한 원산지 규정의 조화나 단순화가 필요하고, 선진국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개도국의 시장접근 개선을 허용하고 서로 소통해야 함도 제기되었다. 디지털 경제와 모바일 기술의 혁신이 개도국에 과제인 동시에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일 수 있음도 패널이 지적하였다. 이는 통상적으로 이야기되어온 개도국의 하부구조 구축, 제도의 개선, 부패 척결, 능력형성, 금융지원 등의 조치와 달라 신선하였고, 실제로 이런 분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기대를 갖게 하였다.

아쉬웠던 점은 한국 정부나 NGO 또는 전문가들의 포럼 참여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일본 정부와 달리 한국 정부가 주관한 세션은 없었으며, 패널로 참석한 한국 전문가나 시민단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포럼의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일부 한국인 청중의 참여만으로 만족하기엔 미흡하다. 오늘날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이러한 자리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인 의제들을 개진하는데 기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다양한 경로로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일조하는, 지식의 공공재를 창출하고 보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6) 각료회의는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최소한 2년에 한 번 개최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지난 제9차 각료회의는 2013년 12월에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개도국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에 관한 보조의 한시적 허용 등을 담은 이른바 발리 패키지(Bali Package)를 채택함.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임송수(2014), 문한필(2014) 및 다음 WTO 웹사이트를 참조 바람(https://goo.gl/3IBSnC).

참고문헌

문한필. 2014. WTO/DDA 발리 패키지 타결과 향후 전망.「세계농업」제161호:193-2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2015. 지속가능개발폭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관리. 농정포커스 제113호(2015. 10.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goo.gl/5ugqr4).

임송수. 2014. WTO 발리 각료회의 합의문.「세계농업」제161호:175-19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oston Consulting Group[BSG]. 2015. The Mobile Revolution: How Mobile Technologies Drive a Trillion-Dollar Impact. January 2015.

International Center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ICTSD]. 2012. Asian Participation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formation Note, December 2012. (http://goo.gl/NEZ4Sg).

Kraemer, K., G. Linden and J. Dedrick. 2011. Capturing Value in Global Networks: Apple's iPad and iPhone. (http://goo.gl/j1cvPM).

OECD/FAO. 2015.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5-2024. OECD Publishing, Paris. (http://www.fao.org/3/a-i4738e.pdf).

Su, Yuezhen. 2014. Country-of-Origin Labeling for Processed Foods. PhD Dissertation, Univ. of Bologna. (http://goo.gl/z9cU7t).

UNCTAD. 2013.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Handbook on the Rules of Origin of the European Union. (http://goo.gl/yHdxSg).

World Economic Forum. 2015.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http://goo.gl/lE2NBw).